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보훈공무원의 대리 등록신청 범위 확대 〉

■ 김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23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보훈공무원의 대리 등록신청 범위 확대	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6. 2. 26.
3. 회부일 : 2026. 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 직접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 등의 경우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공적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와 그 유족 등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3호).

Ⅲ. 검토의견: 보훈공무원의 대리 등록신청 범위 확대

-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 ② (생략)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 ----- ----- ----- -----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u>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u>	3. ----- <u>직접</u> ----- ----- <u>경우 등</u> <u>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특별</u>

러운 경우	히 정하는 경우
-------	----------

□ 현행법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가 직접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직접 등록신청이 어려운 경우¹⁾에는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

○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가 직접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 경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0조(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 ④ (생략)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등록신청) ②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령, 부상, 질병,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말한다.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굴한 희생·공헌자인 경우, 전투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직접 등록 또는 지원 신청을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우라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는 일정한 경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가보훈대상자로 등
 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도 발
 생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직접 등록신청이 어렵지 않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부상 및 가족의 순직 등으로 경황이 없어 등록신청을 못
 하거나, 관련 신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등록 또는 지원 신청
 을 대신할 수 있는 범위를 직접 등록 또는 지원 신청이 어려운
 경우 외에도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려
 는 취지임.

[현행 · 개정안 등록신청 범위 비교]

현 행	개정안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그 외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있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대신 신청이

가능한 사유를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일반법인 현행법에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가보훈부는 현행법상으로도 새로 발굴된 희생·공헌자 등 등록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보훈공무원이 등록 신청을 대신할 수 있고, 신청대상자(본인 및 법 적용 대상 유족)가 존재하는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국가유공자로 기록·예우 및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법체계와 제도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의 실익은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³⁾.

문 의 처
02)6788-5110

3) 아울러, 행정운영 측면에서도 보훈공무원의 신청대행 범위를 확대할 경우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인력 증원 및 예산증액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